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68
----------	-------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 의 자 : 박홍배 · 조계원 · 김태선
김남근 · 이재정 · 이용선
박희승 · 전용기 · 문대림
김상욱 · 전종덕 · 고민정
서영교 의원(13인)

찬 성 자 : 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공단의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제4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추천한”을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 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를 “제1호와 제2호의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임명하며, 제4호의 비상임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 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u>추 천한</u>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u>비상 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 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 서</u> 임명하여야 한다.	④ ----- ----- ----- ----- <u>추천</u> <u>하는 다음 각 호의</u> ----- -----. ----- <u>제1호와 제2호의 비상</u> <u>임이사는 같은 수로 임명하며,</u> <u>제4호의 비상임이사는 1명 이</u> <u>상</u> -----.
<신 설>	1. 사용자대표
<신 설>	2. 근로자대표
<신 설>	3. <u>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 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u>
<신 설>	4. <u>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중에서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u>

⑤ · ⑥ (생략)	<u>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u> ⑤ · ⑥ (현행과 같음)
-------------------	--